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05

발의연월일: 2021. 4. 5.

발 의 자:장제원·이명수·성일종

태영호 • 이주환 • 배준영

김기현 • 이채익 • 김석기

김형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,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만료 후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고,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력수급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·단기적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).

법률 제 호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3년"을 각각 "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취업활동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취업활동 기간의 제한) 외	제18조(취업활동 기간의 제한)
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	<u>5</u>
<u>년</u> 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	<u>년</u>
수 있다.	,
제18조의2(취업활동 기간 제한에	제18조의2(취업활동 기간 제한에
관한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	관한 특례) ①
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	
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	
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	
장받을 수 있다.	,
1.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	1
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	
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	
따른 취업활동 기간 <u>3년</u> 이	<u>5년</u>
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	
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	
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	
자	
2.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	2
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	
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	
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	
간 <u>3년</u> 이 만료되어 출국하기	<u>5년</u>

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	
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	
한 근로자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